

# 충청북도체육진흥협회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3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3. 6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□ 제안이유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(97. 1. 1시행)변경됨에 따라 충청북도체육진흥협회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충청북도체육진흥협회의회 간사와 서기의 직명을개정된 행정조례와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

## □ 주요골자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시행에 따른 충청북도체육진흥협회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충청북도체육진흥협회의회 간사와 서기의 직명변경(제7조 제2항)

- 간사는 내무국장이 ⇨ 문화관광국장이
- 서기는 생활체육과장이 ⇨ 문화체육과장이

## □ 근거법령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3조 및 제11조

## □ 기타참고자료

현행 충청북도체육진흥협회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(전문)

##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7조제2항 중 “내무국장”을 “문화관광국장”으로 “생활체육과장”을 “문화체육과장”으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